

##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 쪽)

|      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시 | 처리기간<br>7일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|

|     |    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|
| 신청인 | 성명 또는 명칭 | 생년월일 |
|     | 주소       |      |

|     |  |
|-----|--|
| 항공기 | 등록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형식 또는 모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제작자 성명(명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제작일련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제작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특별감항증명 분류 [ ] 제한분류 [ ] 실험분류 [ ] 특별비행허가 |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비행 계획 | 비행 목적(용도) |
|       | 일시 및 경로   |
|       | 제한사항      |

그 밖에 비행과 관련된 사항

「항공안전법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감항증명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

|      |  |  |
|------|--|--|
| 첨부서류 | 1. 비행교범(연구·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)<br>2. 정비교범(연구·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)<br>3.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| 수수료(Fee)<br>「항공안전법<br>시행규칙」 제321<br>조에서 정한 수수료 |
|------|--|--|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